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조치 이후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 의무 및 미이행시 제재 처분 기준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21778호, 2026. 6. 9. 공포, 2026. 12.10. 시행)됨에 따라,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안 별표 15)

* 1차 60만원, 2차 80만원, 3차 100만원

나.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안 별표 15)

* 1차 100만원, 2차 150만원, 3차 200만원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5 제2호 로목부터 수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주목까지로 하며, 로목(종전의 도목) 위반사항란 로목 중 “법 제60조의2제6항”을 “법 제60조의2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도목 및 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도. 법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94조제4항제5호의2	60	80	100
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

모.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	법 제94조제3항제1호의4	100	150	200
-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933